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소 재 지		
			점용단 위	기간단 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 중전화 등 지상시설 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 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 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 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액		
2. 수도관, 전 력 구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배수 관 농업용수 관 전기관 전 기통신관 가 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 구(맨홀), 전 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 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 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 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 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 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 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 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 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			7,200	4,850	1,250

	것	하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 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